2022년도 제24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 1. 일 자 2022년 12월 22일(목)
-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 3. 출석위원 이 창 용 의 장(총재)

조 윤 제 위 원

서 영 경 위 원

주 상 영 위 원

이 승 헌 위 원(부총재)

박 기 영 위 원

신 성 환 위 원

- 4. 결석위원 없 음
- 5. 참 여 자 이 환 석 부총재보 배 준 석 부총재보

민 좌 홍 부총재보 이 상 형 부총재보

이 종 렬 부총재보 양 석 준 외자운용원장

김 웅 조사국장 이 정 욱 금융안정국장

홍 경 식 통화정책국장 김 인 구 금융시장국장

오 금 화 국제국장 박 양 수 경제연구원장

김 용 식 공보관 한 승 철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최 문 성 의사팀장 임 현 준 물가연구팀장

- 6. 회의경과
- 가. 의결안건

<의안 제48호 -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12월)」(안)>

-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금융안정보고서 (2022년 12월)」(안)을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에서는 금번 보고서의 작성방향 및 핵심 점검사항,

그리고 보고서 내 개편사항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금번 보고서에서는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강화, 자산가격 하락, 금융·외 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 최근 대내외 여건변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잠재 리스크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현안 분석 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다각도로 살 펴보고. 부동산경기 둔화와 맞물려 코로나19 이후 가파르게 증가한 부동산 기업 금융의 잠재리스크를 점검하였음. 아울러 환율상승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 크 파급경로를 식별하고. 그 영향을 평가해 보았음. 참고박스에서는 전세가격 하 락 등 주택임대차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영향,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위험, 비은행 금융기관의 유동성 리스크.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상황 등도 함께 살펴보고 관련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음. 이밖에 국제사회의 탄소중립정책 본격화 및 암호자산시 장의 영향력 확대 등 중장기적 시계에서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도 점검해 보았음. 한편 금년 7월 실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대한 외부 독자 의견조 사 결과, 전반적으로 현안 과제의 시의성, 분석 내용의 심도 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한 반면, 여전히 난이도가 높고 가독성이 다소 약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이를 반영해 금번 보고서에서는 기존 보고서 체계를 유지하되 요약 부문의 일부를 수 정하였음. 중복된 내용을 줄이기 위해 요약 부문의 '개황'과 '부문별 금융안정 상 황'을 개관으로 통합하여 기술하였고,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 부문은 그래픽으로 처리하여 금융안정 주요 지표로 간소화하였음.

다음으로 12월 8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여러 위원들은 금번 보고서가 주요국 통화긴축 기조 지속 등 최근 부각되는 금융안정 이슈들을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분석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단기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들은 최근 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이 일부 제약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은 금리 상승 외에 우발적 신용사건 발생, 한전채·은행채 발행에 따른 회사채 시장 구축 효과 등이 가세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가계신용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들은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DSR이 크게 높은 것에 대해 가계부채DB를 통해 산출한 DSR은 차주가 실제 부담하는 DSR과 차이 가 있음을 명확히 설명하여 우리나라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대외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또한 일부 위원은 최근 주택 임대차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부담 증대 측면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조달부담 완화 측면도 균형있게 기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음.

민간신용 관리방안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들은 자영업자 지원정책에 대해 향후에는 금융지원 확대보다는 코로나19 관련 지원정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잠재부실이 누증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다른 위원은 정상차주의 대출상환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환율이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환율상승과 하락시에 대칭적인 효과가 나타나는지, 환율상승의 영향이 비선형적인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보고서 개편 방향에 대해 위원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관련 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음.

이어서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지난 한 해 보고서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많이 충실해지고 참고 박스 분석 수준도 훨씬 좋아졌다고 평가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금융안정보고서(2022년 12월)」(안) (생략)

<의안 제49호 -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안)>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6조에 의거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수립·공표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 부서에서는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여러 위원들은 내년에도 물가에 중점을 둔 기준금리 운용 기조를 이어나가되,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이에 유의하여 정책을 운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또한 여러 위원들은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이 부분을 기준금리 운용과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부분에 이어 기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일부 위원들은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시스템 안정은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각각 제시하기보다는 금융안정 부분으로 묶어서 함께 기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경우 시장 변동 요인과 대응 수단 등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별도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아울러 일부 위원은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 조치와 함께 중 장기적인 구조개선 방안도 모색해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외환시장과 금 융시장 간 상호연계성 확대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외환수급 안정화와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 견을 제시하였음.

관련 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고 설명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6조에 의거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붙임과 같이 수립· 공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안)(생략)

<의안 제50호 -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제2회 대출금 재대출(만기 연장) 실시(안)>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1조 제2항, 제28조 제9호 및 제80조에 의거 금통위가 2020년 12월 24일 의결한「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제2회 대출 실시」및 2021년 6월 30일 의결한「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조건 변경」에 따라 동 기구에 대한 제2회 대출금의 만기도래시 대출금 잔액을 재대출하여 만기를 연장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관련 부서에서는 12월 13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 하였음.

관련 부서에서는 SPV는 매입한 회사채·CP에 대해 만기까지 지원받는 것을 전제로 설립되었으며, 금통위는 SPV에 대한 대출조건 의결시 SPV 매입증권 만기 및 SPV 존속기간 등을 의결문 참고사항에 명시한 바 있다고 보고하였음.

이어 모든 위원들은 제2회 대출금 재대출(만기연장)에 대해 동의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제2회 대출금 재대출(만기 연장) 실시를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붙임>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제2회 대출금 재대출(만기 연장) 실시(안)(생략)

나. 보고안건

<보고 제82호 -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개선사항 점검결과>

- (1) 담당 부서장이「한국은행법」제6조 제1항에 의거 「보고 제82호 물가안정 목표제 운영 개선사항 점검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였음.(보고내용 : 생략)
 - (2) 심의결과

설명후 접수